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89
----------	-------

제출년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사유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본조신설에 따라 지역관광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2조)

나.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 설립허가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 고루 참여
- 관광협의회 기능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마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
 -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마포구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 수행
 -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다. 관광협의회 구성 및 조직(안 제6조)

- 협의회 회원들의 자발적 구성
- 협의회 위원 구성
 - 이사 : 10명 이상 20명 이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
 - 감사 : 2명

라.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안 제13조)

-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 되는 규제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16. 9. 13. ~ 2016. 10. 3.)

나.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권고사항 있음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해촉) • 제11조(회의 등) 	이해충돌가능성	감사담당관에서 권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요망

- 조치결과 : 반영

조문	구청장 방침	상정안
제9조 (해촉)	협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협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문	구청장 방침	상정안
제11조 (회의 등)	① ~ ④ (생략) ⑤ ~ ⑦ <신설>	① ~ ④ (구청장 방침과 같음) ⑤ <u>협의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에 대한 회의를 할 경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⑥ <u>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u> ⑦ <u>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다.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있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근거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분석평가 항목 중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이 있음

○ 조치결과 : 반영

조문	구청장 방침	상정안
제6조 (구성및조직)	② <u>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u>	② <u>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u>

라. 자체 추가 검토 : 수정사항 있음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참여 필요

○ 조치결과

조문	구청장 방침	상정안
제12조 (실무협의회)	① (생략) ② <신설>	① (구청장 방침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u>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6.10.11.)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 및 건의
6.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구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조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구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협의회는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는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해촉) 협의회는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 등)** ① 구청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 회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 회장은 해당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에 대한 회의를 할 경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⑥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전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⑦ 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구의 안전행정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 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2. 협의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제1항
: 구청장은 협회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비용 총계 : 50,000천원(2017 세출예산 요구액)
- 산출내역

편성목	예산액(천원)	내용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마포구 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
민간이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0,000	마포구 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마포구 관광협의회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은 2017년 세출 예산 요구액 기준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안전행정국 관광과 허현화
연 락 처	02-3153-8652